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가경정 제1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65,320,218	58,959,607
일반회계	1,363,904,526	40,917,136
특별회계	601,415,692	18,042,471
공기업특별회계	262,245,249	7,867,357
상수도사업	83,913,804	2,517,414
하수도사업	178,331,445	5,349,943
기타특별회계	339,170,443	10,175,113
공유재산관리	190,699,162	5,720,975
의료급여기금	6,977,587	209,32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767,776	53,0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247,727	7,432
교통사업	58,814,437	1,764,433
철도건설사업	8,443,573	253,307
폐기물처리시설	1,508,471	45,254
도시재정비촉진	1,290,578	38,717
도시개발	19,842,052	595,262
기반시설 설치	4,486,230	134,587
문화시설건립	35,000,000	1,050,000
도시재생	10,092,850	302,786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8년도 재무부담행위는 별첨 '재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732,677천원으로 한다.

(1) 일반예비비 29,732,677천원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제 7 조 201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2,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